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Ⅰ. 주요내용

○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, 휴교,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, 그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,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함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제19조제6항 등).

○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,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연 1회,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함(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제70조제1항).

Ⅱ. 검토의견

1.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관련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
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제19조제6항 등)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제19조제6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, 휴교,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,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,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연 1회, 1주 단위로,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그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19조(육아휴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, 휴교,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	제19조(육아휴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(개정안과 같음)

하여야 한다. 다만,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	
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,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.	**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,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.** ----------.

(전문위원 이 은 정)